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5. 11. 7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□ 제정(제안) 이유

- 장애인복지법이 개정(법률 제7184호, 2004. 3. 5 공포, '04. 9. 6시행)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장애인복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 요 골 자

○ 위원회기능 (안 제2조)

-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·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·사업의 실시·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.

○ 위원회구성 (안 제3조)
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, 위원 위촉은 장애인관련 단체의장,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함.

□ 관 련 법 규

-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)

□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대구광역시, 대전광역시, 광주광역시

□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,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등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자격을 장애인 관련 단체장과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,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동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11. 10

보고자 : 이남식